

선정대표자 해임

① 심사(심판) 청 구 번 호	제 호		
② 청 구 인	외 명	③ 처 분 청	
해 임 된 대 표 자	④ 성 명		
	⑤ 주 소		
	⑥ 성 명		
	⑦ 주 소		
	⑧ 성 명		
	⑨ 주 소		
⑩ 근 거 법 령	「국세기본법」 제56조제1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15조제5항		

심사(심판)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.

년 월 일

공동심사(심판)청구인(별지 기재와 같음)

귀하